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960
- 발의자 : 김창수 의원 외 10
- 발의일 : 2017년 8월 11일
-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을 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며, 잘못된 약어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소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함(안 제2조제2호).
- 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다. 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 내 및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으로 함(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2017. 8. 21 ~ 8. 2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의 위원 위촉자격 변경(안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 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위촉 자격을 ‘서울시의회 시의원’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소속 위원인 의원’으로 하고, 임기를 ‘시의원의 임기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은¹⁾ 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제9조제4항에 임시,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위촉·임명하도록 하여, 현행 4명 중 2명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략) 2. 4명의 위원은 <u>시의회 의원</u>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p> <p>제4조(임기) ① (생략) ② <u>시의회 의원</u>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u>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u>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 현행과 같음 > 2. ----- <u>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u>(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 -----.</p> <p>제4조(임기) ① < 현행과 같음 > ② <u>시의원</u> ----- ----- <u>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u>로 -----. -----.</p>

- 1)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6.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재산 증식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및 선물 신고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촉하는 시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관 상임 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연계 및 협조를 통해 윤리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 「공직자윤리법」제9조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1993년부터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1인으로 구성 (민간위원 7인, 공직자 2인, 시의원 2인)
- 권 한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공개) 및 제출자료 조사의뢰
 - 취업제한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
 -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등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범위
 - 서울시 소속 4급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의회소속의 4급이하 공무원
 - 시·군·구의 의원 및 공무원과 그 퇴직자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과의 상충성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지방의회 및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²⁾제7조(직무와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해당 제한 사항이 없다는 점³⁾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권고한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에 기초하고 있으며, 건설·도시·교통 등의 분야의 인·허가에 관련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3)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래학의원 외 18명 발의)’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행동강령」 제7조 부분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모 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수정가결되었음.

<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 >

-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5월, 6~10p 발췌 -

□ 주요 문제점

-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 개선방안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 조치사항

- ‘지방의원 소관 상임위 관련 위원회 참여제한’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안에 반영(제정안 행안부 협의중)

※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나, 「행동강령」 위반 접수·신고시 의장으로 하여금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문위원회는 조례를 기준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지방의회별 별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의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4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4년)’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2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 개정에 맞추어 임기도 함께 조정한 것으로 보여짐.

나. 시의원 위촉과정 중 ‘시의회의 추천’ 삭제

- 안 제2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상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명시한 것은 의회 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나, 시의회는 의결로 의사를 표현하는 바, ‘시의회의 추천’이 시장의 임명·위촉권한의 침해 소지 및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모호함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각 시·도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방법 >

2017.8.10.기준

	시·도 명	의원 추천 방법		시·도 명	의원 추천 방법
1	서 울 특 별 시	시의회 추천	9	부 산 광 역 시	시의회 추천자 2인
2	대 구 광 역 시	시의회 추천	10	인 천 광 역 시	시의회 추천자 2인
3	대 전 광 역 시	시의회 추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의장의 추천
4	광 주 광 역 시	시의회 추천	12	강 원 도	도의회 의장의 추천
5	충 청 북 도	도의회 추천	13	경 상 북 도	도의회 의장의 추천
6	충 청 남 도	도의회 추천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장의 추천
7	전 라 북 도	도의회 추천	15	전 라 남 도	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8	경 상 남 도	도의회 추천	16	울 산 광 역 시	의원 추천규정 없음
			17	경 기 도	의원 추천규정 없음

※ 서울시의 조직구성 및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조례로 시장에게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조례에 동의·추천 등 제약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상위법령이 시장에게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임명·위촉에 제약규정을 둘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1993.2.9. 92추93 - 판결요지 발췌

- 다만, 현행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례의 ‘시의원의 위원 위촉 자격 및 방법’ 규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 조항의 일체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의원의 ‘위원 위촉 자격 및 방법’ >

2017.8.10.기준

서울시 위원회 수 : 185개 위원회
서울시의원 위촉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 : 93개 위원회

서울시의원 위원 위촉 자격 및 방법	위원회 수	비율	비율
총 계	93	100%	100%
서울시의원	49	52.7%	58.1%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5.4%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12	12.9%	21.5%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4.3%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4.3%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10	10.8%	18.3%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6.5%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	1.1%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1	1.1%	2.2%
서울특별시의회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1	1.1%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